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주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00
----------	-------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주미희 의원 등 _ 명

1. 제안이유

- 지난해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을 전부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도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의회사무처·국·과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상호견제하고, 권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령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함.

-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로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10년 전 보다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확대되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률과 제도는 30년 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책무를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이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고, 나아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인사권과 조직권은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

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맞는 의회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한편, 예산편성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와 같이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른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 4. .

안 산 시 의 회